

보 도 자 료			
 환경부 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보다 나은 정부	보도일시	2019년 <u>4월 2일 10:00 이후</u>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	담당 부서	환경부 화학안전과	송용권 과장 / 홍가람 사무관
			044-201-6831 / 6840
	배포일시	2019. 4. 2. / 총 9매	

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 부여...유통과정 체계적 관리

- ◇ 국내로 제조·수입되는 화학물질별로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유통 과정을 추적·관리하는 ‘화학물질관리법’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- ◇ 미신고, 무허가 영업 등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, 국민 건강 피해 최소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

- 환경부(장관 조명래)는 국내로 제조·수입되는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‘화학물질관리법(이하 화관법)’ 개정안이 4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
 - 이번 개정안은 제조·수입 단계에서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, 고유번호를 매개로 사용·보관·판매 등의 화학물질 유통 전 과정을 추적·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먼저 현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‘화학물질 확인신고’로 통합·전환한다.
 - 현행 ‘화관법’에 따르면, 사업자는 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하여 확인명세서를 작성한 후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(현행 화관법 제9조) 해야 했다.
 - 만약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질인 경우에는 환경부 소속 유역(지방) 환경청에 유독물질 수입신고(현행 화관법 제20조)도 해야 했다.

-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‘화학물질 확인신고’로 통합하고, 환경부 소속 유역(지방)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.
- 또한,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성분·함량을 모르는 경우, 국외제조자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, 이에 따른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.
-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고유 식별번호인 ‘화학물질확인번호*’를 부여하여 화학물질의 유통과정 추적·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.
 - * 유해화학물질 여부, 신고년도, 혼합물 및 성상, 일련번호 등에 따라 약 15 ~ 20개자리 번호를 새로이 생성·부여

<화학물질확인번호 구성(예시)>

“ T-10-MG-0000000000-OK 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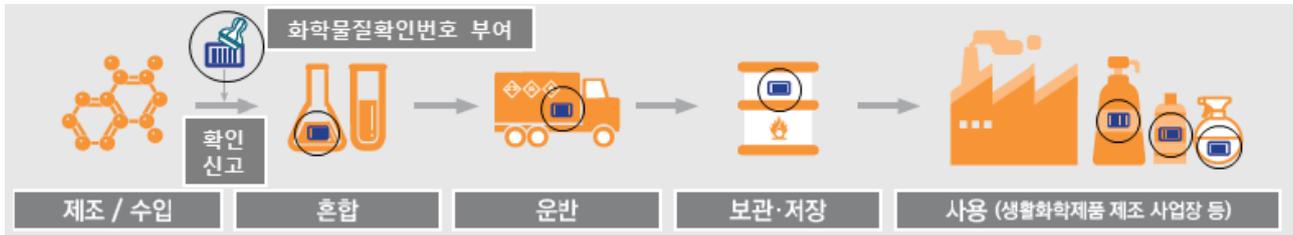
① ② ③ ④ ⑤⑥

① 유해화학물질 여부 ② 신고년도 ③ 혼합물 및 성상(기체G, 액체L, 고체S, 혼합물은 M추가), ④ 일련번호, ⑤ 검증번호, ⑥ 제조국(K국내, F국외)

- 기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제도의 경우, 일부 업종에서 미제출률이 40%를 초과한 사례*가 있었다.
 - * 철강·디스플레이·자동차·중공업 등 4개 업종 112개 사업장의 통관내역(20만 1,200건) 분석 결과, 확인명세서 미제출이 44.1%(8만 8,715건)를 차지('13.1~'15.8)
- 또한, 기업이 화학물질의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·조작하여 보고해도 이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.
 - ※ 동일한 화학물질이 유통되어도 이를 취급하는 기업마다 각종 신고·보고 및 통계조사 시 제품명을 각각 다르게 기입함에 따라 정부가 허위보고 여부를 적발해내기 어려운 구조
-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제조·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 식별번호(화학물질확인번호)를 부여하고, 혼합·보관·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·관리하여 화학물질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.
 - 환경부는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활용하여 기업이 신고한 내용과 화학물질 통관내역·통계조사 등을 교차 검증하고, 허위신고·미신고 등 불법유통 행위를 적발하여 근절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누구나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,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기

때문에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<화학물질확인번호를 매개로 한 유통과정 추적·관리 과정(예시)>



- 이번 ‘화관법’ 개정안 내용 중 화학물질 확인신고와 관련 사항은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.
- 이 밖에 법 운영상 부족했던 점에 대한 보완도 이뤄진다.
 - 유해화학물질을 극소량 취급하여 사고 시에도 외부영향이 거의 없는 시설에 대해 장외영향평가서* 작성·제출을 제외하고,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려는 경우 등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 작성·제출하도록 개선했다.
 - *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평가서
 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개별 법률*에 따라 시설검사를 받고 있는 연구실·학교는 ‘화관법’에 따른 정기·수시 검사를 제외하여 중복검사에 따른 시설검사 대상자들의 부담을 해소했다.
 - * 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’, 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’
 - 장외영향평가서 작성·제출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사항들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- 환경부는 ‘화관법’ 개정안 시행 전까지 개정안의 내용을 적극 알리는 한편, 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.
 - 우선, 산업계를 대상으로 ‘화관법’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업종별 설명회,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적극 듣는다.
 - 화학물질 확인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좀 더 쉽게 검색·제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(유럽연합, 경제협력개발기구 등)에서 공개된 자료 등을 제공하고, 혼합물의 유해성 확인을 위한 전산(프로그램) 개발

·보급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.

- 또한 화학물질 유통관리시스템을 사전에 구축·운영하여 화학물질 확인신고와 화학물질확인번호의 발급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, 확인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안내서 배포, 법 시행일 이전 화학물질 확인 사전신고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.

□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“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확인번호를 부여하여 유통과정을 추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유통이 줄어들고, 화학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도 기여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.
2. 질의응답.
3. 전문용어 설명. 끝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홍가람 사무관(☎ 044-201-684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화학물질 확인신고(안 제9조 개정 및 제20조제2항 삭제)

- 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, 성분별 함량, 유해성 분류정보 등을 확인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
- 유독물질에 대해서도 확인신고를 하므로, 유독물질 수입신고는 삭제
- 환경부장관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도록 함

나. 화학물질 양도 시 화학물질확인번호 제공 의무화(안 제9조의2 신설)

- 화학물질 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을 판매, 수출 또는 보관·저장 등을 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에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함께 제공하도록 함

다. 국외 제조자의 대리인 선임(안 제9조의3 신설)

-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는 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

라.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등(안 제23조제1항·제2항·제3항 개정)

- 유해화학물질 극소량 취급시설 등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제외(안 제23조제1항)
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일부 또는 전부 증설하거나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 작성·제출토록 함(안 제23조제2항·제3항)

※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상향입법

마.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·수시검사 대상(안 제24조제4항 신설)

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연구실, 학교는 개별 법률*에 따라 시설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,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정기·수시 검사 제외
- *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,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
바.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(안 제48조제2항 신설)

- 화학물질 확인신고, 통계조사, 수출입·유통실태 등의 체계적 관리·과약을 위한 시스템 구축

1. 화학물질 확인신고, 화학물질확인번호 부여 등 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은?

- 유해화학물질을 유통·취급하려면 취급기준 준수, 영업허가, 시설기준 준수 등의 의무가 발생하므로, 화학물질(제품)의 국내 유통·취급하기 전에 그 물질이 규제대상물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‘화학물질관리의 출발점’으로서 매우 중요함
 - 그러나, 환경부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철강 등 4개 업종에서 제출된 통관내역 20만 1,200건을 조사한 결과, 이 중 44.1%인 8만 8,715건이 ‘화학물질 확인명세서’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 - 또한 기업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작하여도 이를 교차 검증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음
- 이에 현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을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전환하고, 신고된 화학물질별로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유통 전 과정을 추적·관리하고자 하는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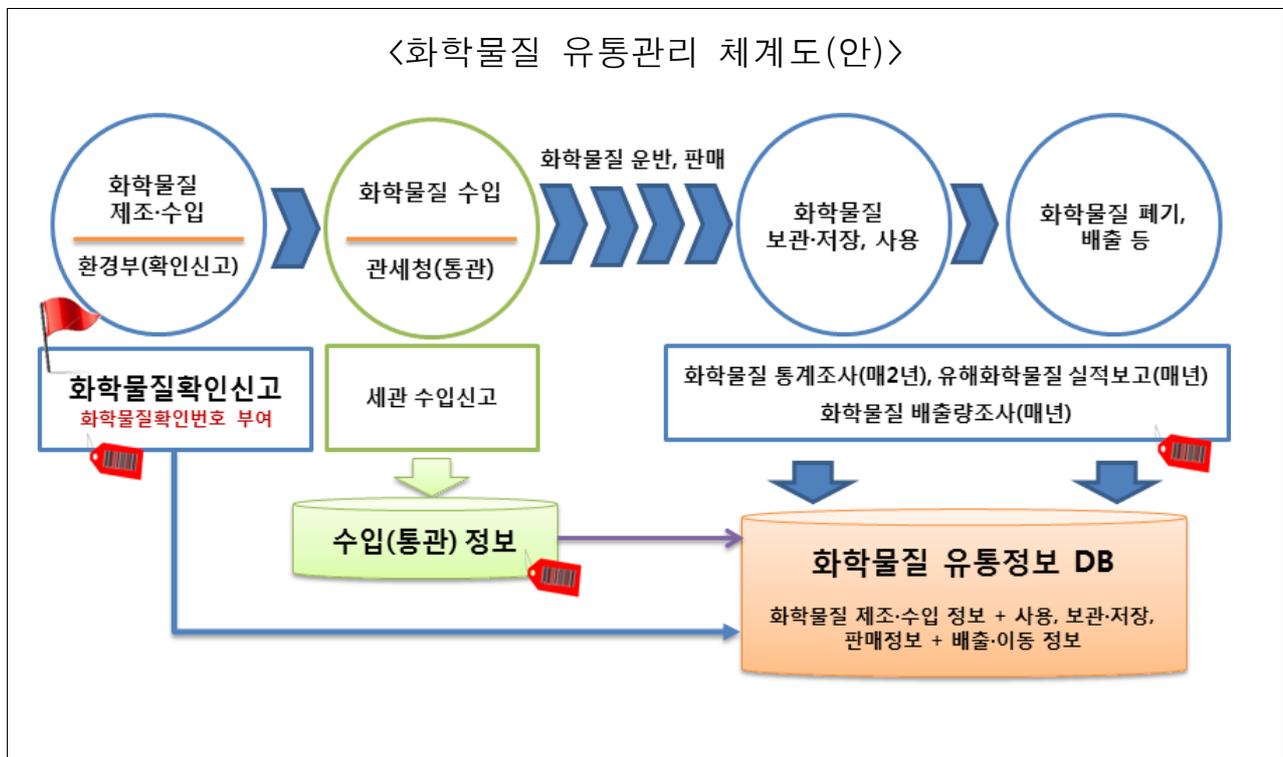
2. 사업자들은 어떤 내용을 신고하게 되는지?

- 제조·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이 유독·제한·금지물질 등*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, 성분별 함량, 성상, 용도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함

* 1. 기존화학물질, 2. 신규화학물질, 3. 유독물질, 4. 허가물질, 5. 제한물질, 6. 금지물질, 7. 사고대비물질, 8. 중점관리물질

3. 화학물질 확인번호로 유통경로 추적·관리가 어떻게 가능한지?

- 화학물질의 유통과정을 전산화하여 “화학물질 유통관리 종합시스템”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유통이력 추적 및 관리가 가능
 - 현행 화학물질 유통과 관련된 관세청 통관자료(매 수출입시), 화관법상 각종 보고자료*를 DB로 구축하여 유통정보를 한 곳에 집적(集積)화
 - * △화학물질 확인신고(제조·수입시) △화학물질 통계조사(매2년) △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실적보고(매년) △화학물질 배출량조사(매년) 등
 - 조사·보고되는 자료를 화학물질 확인번호를 매개로 서로 교차검증하여 유통 이력을 파악하고,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추적·관리 가능



4. 사업자 간 화학물질 확인번호는 제공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?

- 화학물질 확인번호의 제공은 다양한 방식을 인정할 계획임
 - 유해화학물질은 용기나 포장에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표시하게 되므로,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음(개정안 제16조제1항제1호)
 - 그 밖에 확인신고증 사본의 제공, 거래 계약서에 화학물질 확인번호를 포함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
 - 구체적인 사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할 계획임

- **유해화학물질** : 유독물질, 허가물질,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, 사고 대비물질,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
- **유독물질** : 독성 등이 있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, 현재 876종이 지정되어 있음
 - * 예) 벤젠, 페놀, 황산, 염산
- **장외영향평가서** :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평가서